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
(안광석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779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10월 14일

발 의 자 : 안광석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경만선, 김소영, 김춘례,
김태호, 노승재, 신원철,
오한아, 유 용, 이광성,
이종환, 최영주, 황규복
의원(12명)

1. 제안이유

- 서울시 공기업담당관은 2019년 1월 투자·출연기관 간 상이한 임원 연임기간을 1년 단위로 통일하여 탄력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고자 ‘출연기관 임원 연임 개선계획’을 시장방침으로 세웠고, 개정 후 계획에 따라 실행할 예정이었음.
- 약 3년이 지난 2021년 10월 현재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규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로 조례 및 정관에 따라 임원이 연임할 경우 3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임될 수 있음.
- 따라서 공기업담당관이 세운 방침의 목적에 맞게 세종문화회관의 연임 규정을 1년 단위로 개정하고 1회로 제한된 규정은 삭제하여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케 하고, 이를 통해 우수인재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임원의 연임 기간을 3년 단위에서 1년 단위로 변경하고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삭제함(안 제8조제1항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공기업법」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 첨부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.”를 “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인의 이사장·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임원의 임기 및 직무) ① 법인의 이사장·사장·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될 수 있다. 다만, 임원을 연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/p> <p>② - ④ (생략)</p>	<p>제8조(임원의 임기 및 직무) ① --- -----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- ④ (현행과 같음)</p>